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

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115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2. "여성농업인"이란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여성농업인단체"란 여성농업인으로만 구성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
 -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,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지원범위)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함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이천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6조(설치 및 기능)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

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-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1.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4.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 - 1.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
 - 2.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
 - 3.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
 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
 - 5. 질병,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-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, 정기회의는 연 1 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.
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여성농 업인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
 - 3.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
 - 4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12조(수당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)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·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
 - 2.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

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- 3.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
- 4.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
- 제14조(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)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·현장교육·부부공동교육 등
 - 2.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
 - 3.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
 - 4.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
- 제15조(여성농업인 복지향상)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 에 대한 지원
 - 2.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
 - 3.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
 - 4. 출산을 전·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
 - 5.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
- 제16조(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17조(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성농업 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) 시장은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 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

- 2.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교육, 상담 및 행사 추진
- 3.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
- 4.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